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정부혁신·조직관리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 함정 건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경감 3명, 경위 2명) 및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명(순경 18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추가 도입되는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및 VTS 관제레이더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0명(경감 3명, 경위 6명, 경사 15명, 경장 23명, 순경 40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5명(순경 255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68명(경정 3명, 경감 25명, 경위 89명, 경사 116명, 경장 191명, 순경 241명, 9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명(9급 3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토록 하며,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소형정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정원 16명(경위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16명)하고, 해양경찰교육원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순경 10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를 기획재정담당관 사무로 부여하고, 해양경찰청 청사이전(세종→인천)에 따라 해양경찰악단 관리인력 2명(경장 1명, 순경 1명) 및 청사 관리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과 및 종합훈련지원단을 각각 운영지원과, 교무과,

교수과 및 종합훈련단으로 개편하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제 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중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교육훈련과·종합훈련지원단”을 “운영지원과·교무과·교수과·종합훈련단”으로, “교육지원과장·인재개발과장·교육훈련과장 및 종합훈련지원단장”을 “운영지원과장·교무과장·교수과장 및 종합훈련단장”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교육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인재개발과)”를 “(교무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재개발과장”을 “교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수립과 교육의 실시”를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3. 교육생의 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7. 교육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협력사항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교수과) 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의 실시
2. 교수요원의 성과측정, 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
4. 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5.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제36조제5항 중 “36명(9급 36명)”을 “39명(9급 39명)”으로 한다.

별표 4 총 계 “453”을 “48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52”를 “480”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366”을 “392”로 하고, 경정 “48”을 “49”로 하며, 경감 “45”를 “48”로 하고, 경위 “80”을 “82”로 하며, 경장 “53”을 “54”로 하고, 경장 54 다음에 “순경 19”를 신설하며, 일반직 계 “86”을 “88”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하며, 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보건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1”를 신설한다.

별표 4의2 총 계 “472”를 “50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71”을 “499”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365”를 “391”

로 하고, 경정 “49”를 “50”으로 하며, 경감 “45”를 “48”로 하고, 경위 “79”를 “81”로 하며, 경장 “52”를 “53”으로 하고, 경장 53 다음에 “순경 19”를 신설하며, 일반직 계 “106”을 “108”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하며, 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보건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1”를 신설한다.

별표 5 총계 “197”을 “20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96”을 “206”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66”을 “176”으로 하고, 순경 “14”를 “24”로 한다.

별표 5의2 총계 “198”을 “20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97”을 “207”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66”을 “176”으로 하고, 순경 “14”를 “24”로 한다.

별표 7 총 계 “9,980”을 “10,98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9,974”를 “10,983”으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9,129”를 “10,134”로 하고, 경정 “161”을 “164”로 하며, 경감 “508”을 “552”로 하고, 경위 “826”을 “905”로 하며, 경사 “1,788”을 “1,919”로 하고, 경장 “2,677”을 “2,890”으로 한다.

별표 7 순경 “3,123”을 “3,658”로 하고, 일반직 계 “845”를 “849”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보건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30”을 “29”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4”를 “155”로 하며, 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6”을 “17”로 하고, 행정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36”을 “39”로 한다.

별표 7의2 총계 “9,994”를 “11,00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9,988”을 “10,997”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9,129”를 “10,134”로 하고, 경정 “169”를 “172”로 하며, 경감 “507”을 “551”로 하고, 경위 “819”를 “898”로 하며, 경사 “1,788”을 “1,919”로 하고, 경장 “2,677”을 “2,890”으로 한다.

별표 7의2 순경 “3,123”을 “3,658”로 하고, 일반직 계 “859”를 “863”으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보건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30”을 “29”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해양수산서기·환경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54”를 “155”로 하며, 공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환경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6”을 “17”로 하고, 행정서기보·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41”을 “44”로 한다.

별표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제38조 관련)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해양경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100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7명, 경사 15명, 경장 31명, 순경 41명, 9급 1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해양안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225명 (경장 102명, 순경 123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3. 해양경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134명 (경감 4명, 경위 8명, 경사 35명, 경장 36명, 순경 5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해양안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66명 (경사 6명, 경장 18명, 순경 4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항공단 업무(지방해양경찰청)	109명 (경위 21명, 경사 30명, 경장 30명, 순경 28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6. 해양경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173명 (경정 3명, 경감 14명, 경위 12명, 경사 50명, 경장 60명, 순경 31명, 9급 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7. 해양안전 업무(지방해양경찰청)	404명 (경감 2명, 경위 65명, 경사 39명, 경장 98명, 순경 200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8. 항공단 업무(지방해양경찰청)	40명 (경감 9명, 경위 5명, 경사 11명, 경장 12명, 순경 3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9. 형사 요원(지방해양경찰청)	51명 (경위 7명, 경사 16명, 경장 21명, 순경 7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획조정관) ①·② (생략)	제3조(기획조정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③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u>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u>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교육훈련과·종합훈련지원단</u> 및 학생과를 두며, <u>교육지원과장·인재개발과장·교육훈련과장</u> 및 <u>종합훈련지원단장</u> 은 총경으로, 학생과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제11조(해양경찰교육원) ----- ----- ----- <u>운영지원과·교무과·교수과·종합훈련단</u> ----- ----- <u>운영지원과장·교무과장·교수과장</u> 및 <u>종합훈련단장</u> ----- ----- -----.
제12조(<u>교육지원과</u>) <u>교육지원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u>운영지원과</u>) <u>운영지원과장</u>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3조(<u>인재개발과</u>) <u>인재개발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u>교무과</u>) <u>교무과장</u> ----- -----.

1. <u>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u> 2. (생략) 3. <u>교육생의 입교 등록·성적평가 및 학적 관리</u> 4. (생략) 5. <u>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u> 6. (생략) 7. <u>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u> 8. (생략) 9. <u>교육훈련에 관한 연구·개발</u> 제14조(교육훈련과)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합정운영·구조 등 실습·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u> 2. <u>훈련의 성과측정·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3. <u>종합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 4. <u>교육훈련합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5. <u>훈련교재의 연구 및 발간</u> 6. <u>훈련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u>	1. ----- <u>수립</u> 2. (현행과 같음) 3. <u>교육생의 성적평가 및 학적 관리</u> 4.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 제6호와 같음) 7. <u>교육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협력사항</u> 6. (현행 제8호와 같음) <삭제> 제14조(교수과) 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교육의 실시</u> 2. <u>교수요원의 성과측정, 평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3. <u>교육장 및 교안(敎案)의 관리</u> 4. <u>교재편찬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u> 5. <u>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현행과 같음)</u>
---	---

<u>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교류 · 협력사항 (생략)</u> 제15조(종합훈련지원단) <u>종합훈련지원단장은</u>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생략)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u>36명(9급 36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5조(종합훈련단) <u>종합훈련단장은</u> ----- --. 1. ~ 6. (현행과 같음)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39명(9급 39명)</u>----- -----. ⑥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53</u>	<u>481</u>	+28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452</u>	<u>480</u>	+28
경찰공무원 계	<u>366</u>	<u>392</u>	+26
·	·	·	
·	·	·	
경정	<u>48</u>	<u>49</u>	+1
경감	<u>45</u>	<u>48</u>	+3
경위	<u>80</u>	<u>82</u>	+2
·	·	·	
경장	<u>53</u>	<u>54</u>	+1
순경	<신 설>	<u>19</u>	+19
일반직 계	<u>86</u>	<u>88</u>	+2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u>	<u><신 설></u>	<u>1</u>	+1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 서기 · 보건서기 · 환경서기 · 시 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 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4의2]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72</u>	<u>500</u>	+28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471</u>	<u>499</u>	+28
경찰공무원 계	<u>365</u>	<u>391</u>	+26
·	·	·	
·	·	·	
경정	<u>49</u>	<u>50</u>	+1
경감	<u>45</u>	<u>48</u>	+3
경위	<u>79</u>	<u>81</u>	+2
·	·	·	
경장	<u>52</u>	<u>53</u>	+1
순경	<신 설>	<u>19</u>	+19
일반직 계	<u>106</u>	<u>108</u>	+2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물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u>	<신 설>	<u>1</u>	+1
.	.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환경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8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보건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u>	<신 설>	<u>1</u>	+1
.	.	.	
.	.	.	

[별표 5]

해양경찰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7</u>	<u>207</u>	+10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196</u>	<u>206</u>	+10
경찰공무원 계	<u>166</u>	<u>176</u>	+10
·	·	·	
·	·	·	
순경	<u>14</u>	<u>24</u>	+10
·	·	·	
·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해양경찰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8</u>	<u>208</u>	+10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197</u>	<u>207</u>	+10
경찰공무원 계	<u>166</u>	<u>176</u>	+10
·	·	·	
·	·	·	
순경	<u>14</u>	<u>24</u>	+10
·	·	·	
·	·	·	

[별표 7]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본문 및 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980</u>	<u>10,989</u>	+1009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9,974</u>	<u>10,983</u>	+1009
경찰공무원 계	<u>9,129</u>	<u>10,134</u>	+1005
·	·	·	
·	·	·	
경 정	<u>161</u>	<u>164</u>	+3
경 감	<u>508</u>	<u>552</u>	+44
경 위	<u>826</u>	<u>905</u>	+79
경 사	<u>1,788</u>	<u>1,919</u>	+131
경 장	<u>2,677</u>	<u>2,890</u>	+213
순경	<u>3,123</u>	<u>3,658</u>	+535
일반직 계	<u>845</u>	<u>849</u>	+4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 서기 · 보건서기 · 환경서기 · 시 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 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	<u>30</u> ·	<u>29</u> ·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 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방 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	<u>154</u> · ·	<u>155</u> · ·	+1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환경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행정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 ·	<u>16</u> <u>36</u> · ·	<u>17</u> <u>39</u> · ·	+1 +3

[별표 7의2]

지방해양경찰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994</u>	<u>11,003</u>	+1009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9,988</u>	<u>10,997</u>	+1009
경찰공무원 계	<u>9,129</u>	<u>10,134</u>	+1005
·	·	·	
·	·	·	
경 정	<u>169</u>	<u>172</u>	+3
경 감	<u>507</u>	<u>551</u>	+44
경 위	<u>819</u>	<u>898</u>	+79
경 사	<u>1,788</u>	<u>1,919</u>	+131
경 장	<u>2,677</u>	<u>2,890</u>	+213
순 경	<u>3,123</u>	<u>3,658</u>	+535
일반직 계	<u>859</u>	<u>863</u>	+4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 서기 · 보건서기 · 환경서기 · 시 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서 기 · 방송통신서기 또는 경장 ·	<u>30</u> ·	<u>29</u> ·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 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방 재안전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	<u>154</u> · ·	<u>155</u> · ·	+1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환경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6</u>	<u>17</u>	+1
행정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순경 · ·	<u>41</u> · ·	<u>44</u> · ·	+3